제422회국회(임시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특례 신설 등 >

▣ 성일종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792호)
▣ 서지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846호)
▣ 이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461호)
▣ 정을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939호)

2025.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 목　　차 】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2

Ⅲ. 검토의견 ····· 6

1.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 신설 ····· 6

(1) 개정안의 배경 및 입법 추진 현황 ····· 13

(2) 주요 내용 ····· 20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목적사업 변경 등에 대한 지원(이개호의원안) ····· 35

3.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경비 등 추가 보조(성일종의원안, 서지영의원안, 이개호의원안) ····· 40

4. 부칙 ····· 46

【참고자료 1】 어린이집 설치·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등 현황(2018~2024년) ··· 48

【참고자료 2】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현황 ····· 49

Ⅰ. 제안경위

【성일종의원안】

1. 발 의 자 : 성일종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11. 22.

3. 회부연월일 : 2024. 11. 25.

【서지영의원안】

1. 발 의 자 : 서지영의원 등 15인

2. 발의연월일 : 2024. 11. 25.

3. 회부연월일 : 2024. 11. 26.

【이개호의원안】

1. 발 의 자 : 이개호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12. 13.

3. 회부연월일 : 2024. 12. 16.

【정을호의원안】

1. 발 의 자 : 정을호의원 등 15인

2. 발의연월일 : 2024. 12. 26.

3. 회부연월일 : 2024. 12. 27.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일종의원안】

현행법상 사회복지법인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주체 중 하나이지만, 최근 영유아 수 감소 등으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잔여 재산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 사회복지법인의 어린이집 설립·운영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아울러 저출산으로 인해 지방의 보육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등 보육 취약 지역의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지원이 절실함.

이에 어린이집 설립·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해산 및 잔여 재산 귀속 등의 특례를 인정하고 도서·벽지·농어촌 지역과 인구 감소 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법인과 보육 취약 지역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6조 후단 및 제43조의3 신설 등).

【서지영의원안】

최근 영유아 수의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보육 수요 및 재원 영유아의 감소로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재정적인 어려움 등이 큰 상황임. 특

히 인구의 수도권 집중 등으로 도서·벽지·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은 영유아 수 감소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고 있음.

이에 도서·벽지·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안정적인 보육 환경 보장을 위하여 해당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한편, 어린이집 설치·운영을 단일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어린이집 운영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 많음에도 사회복지법인은 해산 시 잔여재산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어 어린이집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에게 불합리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도서·벽지·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어린이집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신설 등).

【이개호의원안】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으로 규정하고 있음.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90년대 시행된 정부의 보육시설 확충정책에 따라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해 왔으며 설립시 영유아 보육사업이라는 단일 사업을 목적으로 한정하여 법인을 허가했음.

그러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73%가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농어촌지역의 급속한 인구 감소에 따라 보육수요 역시 급감하고 있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정원충족률 감소, 재정난 등 운영상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하지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그 잔여재산을 국가 또는 지자체로 귀속시켜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영유아 수가 급감함에도 해산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을 적자 운영해야 하는 상황임.

현재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약 83%는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의 잔여재산 국고 귀속 개정 이전에 설립되었으며, 설립 당시 설립비용의 약 34%만 국비를 지원 받고 나머지는 모두 법인이 비용을 부담하였음.

이에 현행법에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사회복지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및 제43조의4 신설 등).

【정을호의원안】

최근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지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으로 해당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 이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그 목적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않아 오히려 영유아에게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 수의 급감 등으로 인하여 해산할 경우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 신설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그 목적의 달성이 어려워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하는 등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신설 등).

현 행	성일종의원안	서지영의원안	이개호의원안	정을호의원안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① - ---------- ---------- ---------- ---------- ------평가·해산----- ----------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① - ---------- ---------- ---------- ---------- ------평가·해산----- ----------	-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① - ---------- ---------- ---------- ---------- ------평가·해산----- ----------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3조의3(어린이집의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 ①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영유아 수가 크게 감소하여 그 목적을**	제43조의3(어린이집의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 ①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하 "어린이집 운영 법인"이라 한다)**	제43조의3(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①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영유아 수가 크게 감소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	제43조의3(어린이집의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특례) ①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환경 확보와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	은 영유아의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으로 그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	다.	하는 사회복지법인(이하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은 영유아 수가 급감하는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산인가신청서에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으려는 어린이집 운영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산인가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재산 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산인가 신청서에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요청한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회계감사와 운영상황 등을 포함한 잔여재산처분계획서가 첨부된 해산인가신청서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는 기본재산의 설치 및 유지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③ 제1항에 따른 해산과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계획은 해당 어린이집 운영 법인의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	③ 제1항에 따른 해산과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처분계획은 사회복지법인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산과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처분계획서는 해당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보조금의 반환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반환 대상 보조금의 종류 및 범위 등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어야 한다.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해산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계획은 해당 사회복지법인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해산한 어린이집 운영 법인은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다. 다만, 잔여재산 중 목적사업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해산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원활하게 해산할 수 있도록 해산인가신청 당시 사회복지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중 보육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던 재산을 매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목적사업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각종 기본재산 등에 대해서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반환한다.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에 설치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법인의 해산 인가, 제4항에 따른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해산한 사회복지법인은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다. 다만,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잔여재산 중 보조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반환재산 외의 잔여재산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1. 제2항의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 2.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해 출연 3.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과 임직원 보호를 위하여 재원 영유아 및 교직원에 대하여 편입 및 퇴직위로금 등으로 지급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해산된 사회복지법인은 보조금 반환 후 남은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의 처분, 제4항에 따른 재산 매입 또는 제5항에 따른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정비심사위원회를 둔다.	⑥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심사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잔여재산의 처리, 제5항에 따른 편입·퇴직위로금 지급 등에 관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그 밖에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집 운영 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정비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범위와 절차 등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벌칙)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	-	-	제54조(벌칙) ①(현행과 같음) ② ----------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43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목적사업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각종 기본재산 등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해산인가신청서를 거짓 또는 허위로 제출한 자
<신 설>				7의3. 제43조의3제5항 각 호에서 정한 잔여재산 처리방법을 위반한 자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1) 개정안의 배경 및 입법 추진 현황

현행법은 어린이집의 종류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인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1]을 두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정부의 보육시설 확충정책[2]에 따라 취약지역의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되었으나, 저출산으로 보육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재원 영유아가 감소하면서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재정적인 어려움이 큰 상황임.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2024년 11월 말 기준 총 1,173개소로 이 중 54.7%에 해당하는 642개소가 농어촌지역에 있고, 전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중 정원충족률이 50% 미만인 어린이집이 596개소(50.9%), 정원충족률이 20% 미만인 어린이집도 155개소(13.2%)에 달하고 있음.

---

1) 「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 7. (생 략)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설치 연혁

○ (~'90년대 초)「영유아보육법」제정('91) 이전, 아동복리 차원에서 사회복지법인이 설립한 시설 소수 존재
(400여개, 전체 시설의 약 9%)
○ ('95~'99년)「보육시설 3개년 확충계획」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건축비 지원과 진입유도 정책으로 90년대 급등 * 개소 수: 425('92)→ 928('95) → 2010('00)**
○ ('00~) '02년 신축비 지원 중단, '03년 신규 진입법인 인건비 지원 중단으로 보육법인 설립·개설 유인 저하, 이후 지속 감소 추세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수: 2010('00) →1468('10) →1,420('14)→1,414('18)→1,285('21)→1,173('24)
※ 보육시설 3개년 확충계획('95~'97): 보육수요 급증 대응과 여성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3년 동안 국비 지원, 국민연금·고용보험 융자로 보육시설 7,590개 확보 목표로 국공립·사회복지·종교시설 설치 어린이집에 국고·지방비 보조 및 민간어린이집과 기업의 직장어린이집에 국민연금기금과 고용보험기금 융자로 설치 지원 유도, 농어촌 등 아동 희소지역·저소득층 지역은 사회복지·학교·종교부설보육시설, 일반지역에 민간보육시설, 공공기관·기업에 직장보육시설 확충

【지역별·유형별 어린이집 입지 분포】

(단위: 개소, %, '24.11월 보육통계 기준)

구 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민간	가정	계
대도시	3,150	299	2,625	3,191	9,265
중소도시	2,149	232	3,636	5,130	11,147
농어촌	1,179	642	1,945	1,296	5,062
계	6,478 25.4%	**1,173** **4.6%**	8,206 32.2%	9,617 37.8%	25,474 100%

자료: 교육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운영 현황】

(단위: 개소, %, '24.11월 보육통계 기준)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계
전체		299 25.5%	232 19.8%	642 **54.7%**	**1,173** 100%
정원 충족률	50% 미만	129 10.9%	107 9.1%	360 30.9%	**596** **50.9%**
	20% 미만	33 2.8%	33 2.8%	89 7.6%	**155** **13.2%**

자료: 교육부

【어린이집 시설 수 및 보육영유아 현황】

(단위: 개소, 명(현원기준), %(전년대비 증감률), 매연도 12월 말 보육통계 기준)

연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민간		가정	
	시설수	영유아 수	시설수	영유아 수	시설수	영유아 수	시설수	영유아 수
2018	3,602 -	200,783 -	1,377 -	96,787 -	13,518 -	711,209 -	18,651 -	302,674 -
2019	4,324 20.0%	232,123 15.6%	1,343 -2.5%	86,775 -10.3%	12,568 -7.0%	664,106 -6.6%	17,117 -8.2%	273,399 -9.7%
2020	4,958 14.7%	253,251 9.1%	1,316 -2.0%	78,322 -9.7%	11,510 -8.4%	578,196 -12.9%	15,529 -9.3%	230,444 -15.7%
2021	5,437 9.7%	268,967 6.2%	1,285 -2.4%	72,085 -8.0%	10,603 -7.9%	535,428 -7.4%	13,891 -10.5%	208,842 -9.4%
2022	5,801 6.7%	283,121 5.3%	1,254 -2.4%	64,503 -10.5%	9,726 -8.3%	477,628 -10.8%	12,109 -12.8%	184,053 -11.9%
2023	6,187 6.7%	286,487 3.5%	1,206 -3.8%	56,812 -11.9%	8,886 -8.6%	420,219 -12.0%	10,692 -11.7%	159,864 -13.1%
2024	6,507 5.2%	293,782 2.5%	1,171 -2.9%	50,500 -11.1%	8,185 -7.9%	374,418 -10.9%	9,594 -10.3%	139,466 -12.8%

자료: 교육부

한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다른 사회복지법인과 다르게 일반적으로 사업과 운영시설이 보육으로 한정되어 있고, 자본·경영 규모도 영세하여 사업확장·다변화를 통한 자발적 구조개선 역량의 제약에 따른 한계를 가지고 있음.

또한, 사회복지사업 중 노인·장애인·다문화 분야는 수요가 유지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 아동·보육 분야의 수요는 저출산으로 감소될 것이 예상되므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법인은 자력 해결이 어려운 경영환경 여건에 놓여 있고,

보육사업을 하는 법인이 어린이집 건물을 타 사업을 위해 용도변경하려면 보조금 반환 문제, 리모델링 비용 부담 등으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자발적 구조개선은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는 상황임.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귀속 특례와 관련하여 입법 현황을 살펴보면, 제18대부터 제21대까지 법인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사적 귀속을 허용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3]들이 있었으나,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의 공익성, 보조금·세제혜택에 대한 감독 필요, 다른 사회복지법인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신중검토 입장을 유지한 바 있음.

---

3) 제18대(손범규의원안 제1803920호), 제19대(양승조의원안 제1910980호), 제20대(최도자의원안 제2018973호), 제21대(강기윤의원안 제2123873호, 고영인의원안 제2123651호, 임호선의원안 제2123820호, 이철규의원안 제2124011호, 송재호의원안 제2124806호)

한편, 교육부는 학교법인 구조개선 지원과 관련하여 「사립학교법」 제35조의2에서 부실법인의 퇴진기회를 부여하고, 의무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학령인구 격감으로 운영이 어려운 고등학교 이하 법인의 해산에 따른 재산귀속의 특례를 '98년부터 '06년까지 약 9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적이 있으나,

이 특례를 적용받아 해산한 34개의 학교법인 대부분이 잔여재산을 설립자 및 그 자손 등에 귀속하였고, 교육부는 '09년 동 제도의 시효를 연장하고 적용대상을 사립대학 운영 법인까지 확대하는 개정안[4]을 제출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또한, 유사사례로 지방사립대학의 경영난에 따른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위한 입법이 추진되었는데, 제22대에서는 5건의 제정안[5]이 발의되어 상임위 심사 중으로 동 제정안들은 해산하는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일부에 대해 다른 법인에 대한 출연 및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음.

다만, 사회복지법인과 사립학교법인은 구체적으로 적용 법률, 관할기관, 법인재산에 대한 규제 및 해산 사유 등에 있어 차이가 있고,

---

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제1807221호) 법률 제5345호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 부칙의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 등 포함

5) ('24. 11월말 기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정복의원안, 제2202668호), 사립대학의 위기대응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강경숙의원안, 제2203809호),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지영의원안, 제2204447호),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대식의원안, 제2204831호),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성국의원안, 제2205565호)이 발의되어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임

사립대학 구조개선과 관련한 제정안들은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산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잔여재산을 귀속' 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들과는 구분되며,

사립대학과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재산의 규모, 적용대상 법인의 수, 법인해산에 따라 영향을 받는 교직원·학생(영유아)의 규모 등이 다르므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사회복지법인과 학교법인의 비교】

구분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 보충적으로 공익법인법·민법 준용	사립학교법 * 보충적으로 민법 조항 선택적 준용
관할기관	시·도지사	유·초·중·고: 교육감 대학: 교육부장관
재산규제	취득·매도·임대·담보·용도변경 등 재산사용의 경우 시·도 허가 * 각 법인 기본재산 최소보유 가액 등은 관할 시·도, 사업 유형 등에 따라 상이	최소(교육용·수익용)기본재산 확보 要 * 고등학교 이하 법인은 교육감 자체적 규율, 대학 이상은 대통령령·부령 등으로 규율 매도·담보·증여·용도변경 시 허가 필요
해산사유	법인 해산사유는 민법으로만 규율,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시·도지사의 허가, 취소사유만 규정	법인의 사업목적달성불가·합병·파산시 교육부장관 인가받아 해산가능 교육부장관이 직권 해산명령 가능
잔여재산 귀속	정관에 따라 국가·지자체에 귀속	유사사학법인(부실법인 제외)·사학진흥재단(대학)·지자체(고등 이하) 귀속
합병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 다른 사회복지법인과 합병 가능	교육부장관 인가를 받아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 가능

자료: 교육부

교육부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기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중 영유아 수 감소 등으로 2년 이상 어린이집을 휴원 중인 법인은 12개소이고, 어린이집을 폐원하였음에도 해산되지 않고 존속하는 법인의 수는 41개소이며,

최근 7년간(2018년~2024년) 해산을 신고한 사회복지법인은 7개소이고, 목적사업을 전환한 사회복지법인은 17개소(노인시설 13개소, 아동시설 2개소, 장애인시설 2개소)임. <참고자료 1: 어린이집 설치·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등 현황(2018~2024년)>

아울러, 지속적인 출생아 수의 감소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시설 수 및 재원 영유아 수도 감소하고 있는 현실이고, 유보통합에 따라 어린이집의 관리·감독기관이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었으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여전히 사회복지법인으로서 교육부와 함께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6]하에 있으며, 유보통합으로 유치원(학교)과 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의 유형을 단순화한 통합기관[7]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등 정책 환경의 변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참고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휴원, 폐지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시설의 휴지, 폐지는 모두 지자체

6)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은 보건복지부에 있으나 개별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재정지원, 관리·감독 등은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7)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교육부, 2024.6.27.
※ 유치원(3개 유형: 국립, 공립, 사립)과 어린이집(7개 유형: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협동, 직장)의 유형을 단순화한 통합기관(국공립, 사립)을 마련 중

○ 통합기관 개요
▸ 통합기관은 '영유아(0~5세)를 위한 다양하고 유연한 학교*'
* 영유아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 초중등학교보다는 설립과 운영 측면에서 유연성과 다양성을 폭넓게 보장
▸ 명칭은 영유아학교 또는 유아학교 등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히 결정
- 명칭은 통합법 시행과 동시에 기존기관에도 일괄 부여
※ 기존기관에 대해 일정 기간(예: 10년) 경과규정을 적용하고, 기한 내 설립·운영 기준을 미충족하는 기관에 대해 향후 행·재정 지원 제외 검토

장에 대한 신고와 지자체장의 신고 수리를 거쳐 이루어지며, 신고 기간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유사한 절차로 운영되고 있음.

【시설의 휴지·재개·폐지 절차】

구분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시설
휴지	어린이집 운영 중단 2개월 전까지 보육교직원, 부모 등에게 사전 고지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휴지 신고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보육영유아 전원조치 등 권익 보호 조치, 재산 사용·처분계획 등 확인 후 신고 수리(휴지기간 최대 1+1년) ※ 영유아보육법 제43조, 시행규칙 제36조	시설 휴지 3개월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휴지 신고 → 시·군·구 시설 거주자의 권익 보호 조치여부, 보조금 사용실태 등 확인(현지조사 등) 및 보조금 등으로 조성한 남은재산 회수 등 조치 후 신고 수리 ※ 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 시행규칙 제26조
재개	어린이집 재개 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개 신고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신고 수리(특별한 확인 절차 미규정) ※ 영유아보육법 제43조, 시행규칙 제37조	시설 재개 3개월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개 신고 → 시·군·구 운영 중단 사유 해소여부, 향후 안정적 운영계획 등 확인 및 시설 거주자의 권익 보호 조치여부 등 확인(현지조사 등) 후 신고 수리 ※ 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 시행규칙 제26조
폐지	어린이집 운영 중단 2개월 전까지 보육교직원, 부모 등에게 사전 고지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지 신고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보육영유아 전원조치 등 권익 보호 조치, 재산 사용·처분계획 등 확인 후 신고 수리 ※ 영유아보육법 제43조, 시행규칙 제36조	시설 폐지 3개월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지 신고 → 시·군·구 시설 거주자의 권익 보호 조치여부, 보조금 사용실태 등 확인(현지조사 등) 및 보조금 등으로 조성한 남은재산 회수 등 조치 후 신고 수리 ※ 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 시행규칙 제26조

자료: 교육부

(2) 주요 내용

개정안들은 공통으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영유아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도록 하고, 해산한 사회복지법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특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안 제43조의3)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다만, **이개호의원안**은 해산인가신청 당시 사회복지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중 보육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던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할 수 있는 '직접사용 재산의 매입' 규정을 두고 있고, **정을호의원안**은 잔여재산의 처분 방법으로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과 임직원 보호를 위하여 재원 영유아와 교직원에 대한 편입, 퇴직위로금 지급'과 '기본재산 미반환 및 잔여재산 귀속 절차 위반 등에 따른 벌칙'을 두고 있으며,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성일종의원안	서지영의원안	이개호의원안	정을호의원안
요건	(제1항) 영유아 수가 크게 감소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시·도지사 인가	(제1항) 영유아의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으로 그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도지사 인가	(제1항) 영유아 수가 크게 감소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시·도지사의 인가	(제1항) 영유아 수가 급감하는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시·도지사 인가

구분	성일종의원안	서지영의원안	이개호의원안	정을호의원안
대상	(제1항)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제1항)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하 **"어린이집 운영 법인"**)	(제1항)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제1항)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환경 확보와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하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
잔여재산 처분계획서 제출	(제2항) 해산인가신청서에 잔여재산 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제2항) 해산인가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재산 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제2항) 해산인가신청서에 잔여재산 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제2항) 시·도지사는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회계감사와 운영상황 등을 포함한** 잔여재산처분계획서가 첨부된 해산인가신청서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
	(제3항) 잔여재산 처분계획은 법인 이사 정수 3분의 2이상 동의	(제4항) 잔여재산 처분계획은 법인 이사 정수 3분의 2이상 동의	(제3항) 잔여재산 처분계획은 법인 이사 정수 3분의 2이상 동의	(제3항) 잔여재산 처분계획은 법인 이사 정수 3분의 2이상 동의
잔여재산 귀속	(제6항)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	(제4항)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	(제5항)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	(제5항) 반환재산 외의 잔여재산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 1. 제2항의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 2.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해 출연 3.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과 임직원 보호를 위하여 재원 영유아 및 교직원에 대하여 편입 및 퇴직위로금 등으로 지급**
보조금 반환	(제3항)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반환 계획 포**	(제4항) 잔여재산 중 목적사업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에 해**	(제5항) 다만,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잔여재산 중 보조금에 해**	(제4항) **목적사업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각종 기본재산 등에 대해서는**

구분	성일종의원안	서지영의원안	이개호의원안	정을호의원안
	함, 반환 대상 보조금의 종류 및 범위 등은 교육부령으로 정함	**당하는 부분은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	**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반환**
직접사용 재산의 매입	-	-	(제5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산인가신청 당시 사회복지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중 보육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던 재산을 매입할 수 있음	-
절차	(제5항)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제5항)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제6항) **시·도지사 소속으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정비심사위원회**를 둠 (제7항)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정비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6항) 시·도지사는 잔여재산의 처리, 편입·퇴직위로금 지급 등에 관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벌칙	-	-	-	**(제54조제2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목적사업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각종 기본재산 등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자 **(제54조제4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산인가신청서를 거짓 또는 허위로 제출한 자, 잔여재산 처리방법을 위반한 자

개정안들은 취약지역의 보육수요 담당에 기여하였음에도 저출산 및 지방인구 감소로 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해산을 통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통해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경영난은 저출산 및 지방인구 감소라는 사회적 변화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로 개별 어린이집의 운영상 미비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보육수요에 맞춰 대도시, 중소도시 등에 주로 위치한 민간·가정어린이집과 달리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농어촌이라는 취약지에 분포되어 있으며, 이는 90년대 정부의 「보육시설 3개년 확충계획」에 따른 보육인프라 확충사업에 기인함을 감안할 필요도 있음.[8)]

다만,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는 사회복지법인 설립의 공공성, 다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과의 형평성, 사회복지법인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및 세제혜택에 따른 제한 및 취약지에 거주 중인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

---

8) 한국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연합회의 의견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 보육사업자 유치를 위해 인건비 지원과 기타 운영지원을 약속하고, '토지 기부채납 형식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어린이집 설치 시 건축면적 80평에 해당하는 건축비와 인건비의 90%, 시설관리 운영비 80% 등의 조건으로 각 개인의 토지와 초과건축 비용을 사유재산으로 법인에 출연하여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것이라고 함

그러나, 정부가 공보육 실현을 위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설립을 적극적으로 유도했으나, 보육정책 변화와 함께 인건비 지원율이 감소하고 운영비가 삭감되는 등 정부가 본래의 지원 및 설립 취지를 위반하여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외면하고 있다는 의견임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재정지원 변경 추이 >

기 간	지원내용	어린이집 지원율		
		원장, 영아반교사	유아반교사	운영비
1991~1994	인건비, 운영비	90%	90%	지원
1995~2004	운영비 전액, 인건비 지원율 삭감	90%	45%	-
2005~	기관별 지원에서 아동별 지원으로 전환	80%	30%	-

따라서,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해산법인 잔여재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출연한 재산은 설립자 또는 출연자의 개인재산이 아니라 법인에 귀속되어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출연재산과 이후 증식된 재산은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사용·처분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잔여재산을 특정인(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임.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9]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남은 재산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하고,

---

9)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남은 재산의 처리) ①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산한 법인의 이사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로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9조(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①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2. 출연자 또는 이사와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6촌 이내의 혈족
   나. 4촌 이내의 인척
   다.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친생자(親生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親養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그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5. 출연자 또는 이사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법인의 이사

제10조의6(이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해산한 법인의 이사와의 관계가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해산한 법인의 이사 본인 및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무상 대여 및 사용·수익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참고로, 개정안의 내용과 유사한 입법례인 「사립학교법」 제35조의2[10]는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하도록 규정[11]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과는 차이가 있으며, 해당 조항은 1997.8.22. 본조 신설 후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약 9년간 한시적으로만 운영[12]된 바 있음.

---

10) 「사립학교법」

제35조의2(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학생 수가 크게 감소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으려는 학교법인은 해산인가신청서에 잔여재산 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산과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계획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원활하게 해산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산인가 신청 당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산장려금의 지급
2. 해산인가 신청 당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중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었던 재산의 매입

⑤ 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해산,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의 처분 및 제4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감 소속으로 사학정비심사위원회를 둔다.

⑥ 제5항에 따른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 학교법인은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다.**

11)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제6조(사업) 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2) 「사립학교법」 제35조의2는 1997.8.22. 본조 신설 당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12.31.까지 학교법인의 해산인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하였으나, 2004.1.29. 해당 규정의 적용시한을 2006.12.31.로 3년 연장한 뒤 이후 추가 개정은 없었음

다만,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원활한 해산을 통한 구조조정 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잔여재산의 특정인 귀속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려는 경우라도 「사회복지사업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기간 및 대상을 한정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개정안 중 서지영의원안과 정을호의원안은 안 제43조의3제1항에서 '영유아의 수가 크게 감소하여 그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외에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명시하여 적용대상을 제한하고 있는데, 해당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위치한 지역의 영유아 인구 전망, 어린이집 공급 분포 등 보육서비스 제공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하여 교육부령에 위임할 합리적인 허용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또한, 개정안의 해산법인 잔여재산의 다른 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 출연과 관련하여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의 개정취지(2003.7.)를 고려하여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출연으로 새로 설립된 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성을 도모하고[13],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출연 요건도 마련해야 할 것임.

---

13)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기본이념) ②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참고로, 「사회복지사업법」은 2003년 7월 개정[14] 전에는 해산법인의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게 귀속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후 현행과 같이 잔여재산의 귀속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귀속된 재산을 해산한 법인의 이사 본인 및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로 있는 법인에 대해서 무상 대여, 사용·수익을 금지한 바 있음.

둘째, 개정안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 다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여타의 사회복지법인에서도 동일한 요구가 제기되는 경우 사회복지법인 제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는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4)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 개정 내용

개정 전 [법률 제5358호, 1997.8.22. 전부개정]	개정 후 [법률 제6960호, 2003.7.30. 일부개정]
제27조(잔여재산의 처리) ①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귀속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남은 재산의 처리) ①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산한 법인의 이사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로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의 내용은 사회복지사업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음.[15]

다만, 「정부조직법」 개정(2024.6.27. 시행)으로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던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가 교육부로 이관되었고, 유보통합에 따라 학교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한 통합기관 마련을 준비 중이므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다른 사회복지법인과는 다른 성격도 가지게 되었음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보임.

---

1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 허. (생 략)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각종 보조금[16]과 세제혜택[17]이 지원되고 있는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잔여재산이 조성되는 측면도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18]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 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를 하고,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19]는 보조금으로 조성한 중요

---

16) 교육부에 따르면, 인건비(보육교직원 급여 등 국공립 어린이집과 동등한 지원을 받음), 기능보강비(동일 부지 내에서 보육환경 개선 등 보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설의 증·개축비를 지원), 시설 개·보수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이 농어촌에 소재한 경우 운영비도 지원함

17)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다른 법률의 준용)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조세 감면 등) 공익법인에 출연(出捐)하거나 기부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소득세·법인세 및 지방세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8) 「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시설의 휴지·재개·폐지 신고 등) ①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지체 없이 시설의 운영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운영자는 **그 운영을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다시 시작하거나 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시설 운영이 중단되거나 시설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고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5. 그 밖에 시설 거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1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재산의 처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이를 통한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개정안들 모두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고 남은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해서만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조금 반환 대상 및 범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통해 관련 관계 법령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 양도, 교환, 대여
3. 담보의 제공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중요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 4. (생 략)

제16조(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자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2.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인 경우. 다만, 제2호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한 경우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재산 현황】

(단위: 개소, 천원, '24.11월 각 지자체 제출자료 기준)

구분	법인수	어린이집수	기본재산액	보조금 지원액	부채액
전체	1,025	1,032	540,178,333	126,529,978	4,037,147
평균액			518,903	121,547	3,878
중간값			411,186	161,603	40,688

주: 기본재산액은 정관에 기재된 금액으로 조성 당시의 평가금액으로 추정
자료: 교육부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는 자력 회복이 불가능하고, 소재 지역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등 제한적인 적용대상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잔여재산의 특정인 귀속 특례를 허용하여 법인의 원활한 해산을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개정안에 대해 이견이 없다는 의견임.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타 사회복지법인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경기도청)과 사회복지법인 전체에 대한 형평성 논란 및 해산 특례 대상 확대 요구와 관련된 쟁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귀속 금액의 한도 설정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대구광역시청) 등이 있음.

교육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교육부 등 관계기관 의견】

관계기관	의견
교육부	○ 과거 정부 정책으로 대다수 어린이집 운영 법인은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입지해 있고, 운영상 미비로 인한 것이 아닌 저출산, 지역소멸이라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보육수요가 없어 목적사업 수행이 어려운 여건에 직면하고 있으며, 어린이집만 운영하여 타 법인에 비해 영세하여 재정 제약 등으로 타 복지사업으로의 전환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법안과 같이 잔여재산 조성에 기여한 보조금은 해산시 반환되며 과거 유사 입법례가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자력회복이 불가능하고, 소재지역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등 제한적인 적용대상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잔여재산의 특정인 귀속 특례를 허용하여 법인의 원활한 해산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반환 보조금의 대상, 범위,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할 필요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의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시·도와 시·군·구에 각각 설치되어 있고, 시·도지사가 해산 인가의 주체이므로 시도에 설치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명확히 명시할 필요 ○ (이개호의원안) 기본재산 중 보육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던 재산의 재원에는 해산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반환받아야 할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국가 또는 지자체의 특별한 사용목적 없이 단순히 법인의 재산처분 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이를 매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이개호의원안)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만을 위한 별도 위원회 설치보다는 현행법상 시도에 설치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보강을 통해 활용하는 것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측면상 실익이 높다고 판단됨 ○ (정을호의원안) 재원 영유아 및 교직원에 대한 편입 및 퇴직위로금 지급안의 경우, 현재 어린이집 폐지시에는 폐지 2개월 전까지 교직원, 부모 등에게 사전고지하고, 영유아의 전원조치 등 권익 보호 확인 이후 폐지가 가능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며,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폐지시에만 퇴직위로금 지급을 허용하면 영유아 감소로 폐지가 급증 중인 민간, 가정 등 타 어린이집의 면직 교직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는 등 지원 취지의 타당성 확보가 곤란하므로 신중검토 필요 ○ (정을호의원안) 해산 허위 신청, 잔여재산 처리방법 위반 등의 방지를 위한 벌칙규정 신설 필요성에는 동감하나, 보조금 즉시 반환 위반 관련 벌칙의 경우 즉시의 시기, 시점이 모호하고, 반환에 필요한 재산처분(청산)의 소요기간 등을 고려한 보조금 반환 절차 진행 필요성을 감안할 때 단순히 즉시 반환하지 않는 사유로 벌칙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비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검토 필요

관계기관	의견
시·도교육청	<전북교육청> ○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가 관계법령 위반으로 회수 등 재정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재산 미지급할 필요 ○ 잔여재산의 범위 및 세부사항은 보육정책위원회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보완 필요 <대구교육청> ○ 해산 사유를 영유아수 감소로 인한 운영 곤란만으로 규정하는 경우 보조금 부정수급 등으로 폐쇄되는 시설 등에서 악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예외사유 명시 필요 <세종교육청> ○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관리운영 중이므로,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특례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되어야 함
지방자치단체	<경기도청> ○ 법인 해산인가 및 잔여재산 처리에 관한 심의는 보육정책위원회의 본질적 기능에 부합하지 않고 전문성, 대표성이 결여되므로 법인 해산 및 지도, 점검 주관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안 제6조제1항) ○ 어린이집 운영 법인은 이미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여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고 법인으로서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산법인 재산 귀속에 대한 추가적인 특례를 인정한다면 타 사회복지법인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 <대구광역시청> ○ 보육법인의 해산 사유를 영유아 수 감소로 인한 운영곤란만으로 규정하는 경우, 보조금 부정수급 등으로 폐쇄되는 시설 등에서 악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예외 조항(행정처분에 따른 시설 폐쇄에 따른 법인해산의 경우 등) 명시가 필요함 ○ 보육법인 외 타 목적 사회복지법인(노인, 장애인 등) 중에서도 시설 노후화 및 사용자 감소로 목적달성이 어려운 시설의 경우, 보육법인에만 해산 특례를 규정한다면 사회복지법인 전체에 대한 형평성 논란 우려 및 해산 특례 대상 확대 요구와 관련된 쟁송 가능성 있음 ○ 사회복지법인은 그 기능의 공공성으로 건물 신축부터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등을 국가 및 지자체가 예산 지원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법인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처리시 법인 설립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귀속 금액의 한도 설정 (국가 반환금과 개인 귀속 금액의 비율 또는 최대한도액)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관계기관	의견
한국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연합회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당면 문제 - 보육정책의 변화로 인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입지 약화 - 지속적인 초저출산과 도시 인구 유출로 원아 수가 감소하고, 이에 따른 정부 예산의 축소로 운영의 어려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과 교육부 학교법인 간의 성격 차이로 인해 민간시설임에도 정부지원시설로 분류되는 이중적 구조 문제 - 다른 목적사업으로의 전환에 현실적인 어려움과 재정 분담 문제 - 휴·폐원 어린이집의 법인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문제와 어린이집 건물의 활용 방안에 대해 지자체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음 ○ 보육아동의 절대적 감소로 인한 정원충족율의 지속적인 저하는 불가피하고, 사회복지법인의 특성상 재산처분 등의 제한으로 개인소유 민간어린이집에 비해 아동감소에 따른 신축적인 대응 곤란 ○ 보육아동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해산 시 재산의 정부 귀속 규정, 타 사회복지사업으로의 전환의 어려움 등으로 기존 시설을 휴원하고 방치할 수 밖에 없음 ○ 변화하는 인구사회적, 정책적 변화에 맞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아동감소로 보육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합리적 퇴로방안 근거 마련이 필요함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목적사업 변경 등에 대한 지원(이개호의원안)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제43조의4 신설).

현 행	이개호의원안
<신 설>	제43조의4(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변경 등에 대한 지원) ①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하 "어린이집 운영 법인"이라 한다)이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하게 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의 변경 또는 추가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목적사업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어린이집 운영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건물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또

	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인 경우 다른 목적사업으로 사용하는 형태의 재산처분에 대한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2. 전환하려는 목적사업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기준의 충족을 위한 증·개축 비용 등의 보조 또는 융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정관 변경 및 제23조에 따른 기본재산 용도변경·매각 등 재산처분 허가 등 목적사업 변경을 위해 필요한 관계법령상 인허가 신청에 대한 우선적 처리 4.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우선매각 또는 임대 5. 전환하려는 목적사업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경영·재무 등 컨설팅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의 변경 또는 추가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⑤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법인의 목적사업 변경 또는 추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법인설립 허가, 이사회의 구성, 재산의 취득 및 처리 등에 관하여 별도의 제한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영유아 수의 격감 등으로 그 목적의 달성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하되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두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사업전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사회복지법인이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사회복지사업법」[20]에 따라 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 변경 인가, 법인 기본

---

20)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정관) ①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종류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임면(任免) 등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수익(收益)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남은 재산의 처리방법
11. 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②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재산 등) ①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價額)을 정관에 적어야 한다.

③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재산인 건물의 용도변경 등 재산처분 허가 등이 필요하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폐지 신고[21] 및 새로운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신규시설 지정[22] 등의 절차가 필요함.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어린이집 건물은 부동산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23]에 따라 용도변경·매각 등 재산처분에 대한 보조금 반환 등의 제한이 있음.

---

21) 「영유아보육법」
제43조(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가된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2) 예를 들면 기존 어린이집 건물을 용도변경하여 주야간보호기관으로 전환할 경우,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폐지 신고,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정이 필요함

2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현황을 보고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고받은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④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개정안 제43조의4는 제3항 각 호에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목적사업 변경 등에 필요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4항 및 제5항에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되 구체적인 사항은 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 내 사회복지사업 수요, 타 사회복지사업 전환을 통한 기능정상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고,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목적사업 변경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법인 규모, 지역 여건 등에 따라 타 목적사업으로 변경 또는 추가가 가능한 경우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에는 동감하나, 개정안의 구체적인 사항은 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그 밖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제43조의4제3항제6호)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체계상 효율적이라는 의견임.

충북교육청은 어린이집이 아닌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시설 및 설비비용을 영유아보육법에서 융자 또는 보조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다른 사회복지법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재정지원 여부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3.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경비 등 추가 보조(성일종의원안, 서지영의원안, 이개호의원안)

개정안들은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운영 경비 및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등을 추가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6조 후단 신설).

현 행	성일종의원안	서지영의원안	이개호의원안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직원(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후단 신설>	----------. 이 경우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운영 경비** 및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등을 추가로 보조할 수 있다.	----------. 이 경우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운영 경비** 및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등을 추가로 보조할 수 있다.	----------. 이 경우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운영 경비** 및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이나 **어린이집의 시설 개보수 비용**을 추가로 보조할 수 있다.

현행법 제36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직원(대체교사 포함)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등에 대한 보조 근거를 두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52조[24]는 취약지역의 보육수요를 담당하고 있는 도

24) 「영유아보육법」
제52조(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제17조제5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및 제24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구체적인 범위,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에 대하여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및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현행법에서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에 대하여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영유아의 수가 적고, 보육교직원 채용이 어렵다고 예상되는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임.

한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제2조제1호[25]에서 "인구감소지역"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정의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

---

2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생 략)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인구감소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2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으로 정하고 있음.[26]

또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제21조[27]에서 인구감소지역의 보육기반의 확충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전환 및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두고 있음.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할 의무가 있으며,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므로,

개정안과 같이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운영 경비 및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등을 추가로 보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

26)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시행 2024. 2. 27.]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15호, 2024. 2. 27., 일부개정])에 따르면, 2023년 7월 1일 기준 89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정되어 있음.

2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1조(보육기반의 확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채납이나 무상임대의 방식으로 민간어린이집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해산하는 경우 대체할 보육시설의 미비로 보육서비스 제공 자체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으므로 법인해산에 앞서 당초 설립 목적대로 보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측면도 있다고 보임.

다만, 현행법에는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기준 완화 외에는 별도의 지원사항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28] 및 보육사업안내(교육부 지침)를 통해 보육교사 인건비 추가 지급, 어린이집 기능보강(증·개축비, 개·보수비, 장비비) 지원, 차량운영비 지원 및 농어촌 소재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도 있겠음.

<참고자료 2: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현황>

교육부는 도서·벽지·농어촌지역, 인구감소지역 등 취약지의 필수적인 보육환경 유지 및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해 이견이 없다는 의견임.

---

28)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0조(도서ㆍ벽지 및 농어촌 지역 등의 어린이집)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
2. 행정구역상 면 지역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의 지역에 대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 제2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규모에 관한 사항 중 최소 보육인원에 관한 사항
2.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보육교사 1명당 담당 영유아 수
3. 별표 8 제2호바목에 따른 비용의 지출에 관한 사항 중 보육교사의 인건비 추가 지급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다만, 전북교육청은 기관의 존치를 위하여 비용을 추가 지원하는 것은 공립유치원 및 주변 보육·교육기관과 어린이집의 경쟁체계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고, 유보통합 취지와도 맞지 않기에 추가 비용 지원보다는 인근 유치원과 통합할 경우 통합경비에 드는 비용 등을 보조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4. 부칙

개정안들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하고, 잔여재산 처분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와 유효기간(서지영의원안, 정을호의원안)을 두고 있음.

성일종의원안	서지영의원안	이개호의원안	정을호의원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해산인가를 신청하는** 사회복지법인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2조(잔여재산 귀속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산인가를 신청하는** 사회복지법인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잔여재산 처분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해산인가를 신청하는** 사회복지법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잔여재산 처분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해산인가를 신청하는** 사회복지법인부터 적용한다.

개정안들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원활한 해산을 통한 구조조정 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잔여재산의 특정인 귀속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려는 경우이므로, 「사회복지사업법」의 취지를 반영해 기간을 한정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다만 유효기간(5년, 10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임.

참고로, 개정안의 내용과 유사한 입법례인 「사립학교법」 제35조의2는 당초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였으나, 2차례 개정을 통해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약 9년간 적용된 바 있음.[29]

교육부는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등을 위해 6개월 경과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대규모 해산에 따른 취약지의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접근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특례의 한시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92

29) 「사립학교법」
부 칙 <법률 제5345호, 1997. 8. 22.>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학교법인의 해산인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시행 2000. 12. 30.] [법률 제6332호, 2000. 12. 30., 일부개정] 법률 제5345호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중 "2000년 12월 31일까지"를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시행 2004. 1. 29.] [법률 제7118호, 2004. 1. 29., 일부개정] 법률 제5345호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중 "2003년 12월 31일까지"를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참고자료 1】 어린이집 설치·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등 현황(2018~2024년)

시도	2024.6.30. 기준			2018.1.1~2024.11.30 기간						
	2년 이상 휴원 중인 법인 수	주요 휴원 사유	폐원 후 해산 되지 않고 존속하는 법인 수	해산 신고한 법인 수	청산 후 소멸한 법인 수	잔여재산 처리결과	사업 전환한 법인 수	전환한 사업유형	합병 신청한 법인 수	허가여부
총계	**12**	**-**	**41**	**7**	**5**	**-**	**17**	**-**	**3**	**-**
서울	-	-	-	-	-	-	2	노인(2)	-	-
부산	1	도시개발로 인한 토지수용	2	-	-	-	1	노인(1)	-	-
대구	4	영유아감소	5	-	-	-	3	노인(2) 아동(1)	1	여
인천	-	-	-	-	-	-	-	-	-	-
광주	-	-	1	-	-	-	2	노인(1) 아동(1)	-	-
대전	-	-	-	1	1	지자체 귀속	1	노인(1)	-	-
울산	-	-	-	-	-	-	-	-	-	-
세종	-	-	-	-	-	-	-	-	-	-
경기	2	어린이집 부지 토지수용	3	-	-	-	1	노인(1)	-	-
강원	1	운영난	6	2	2	지자체 귀속	-	-	-	-
충북	1	원아부족	-	-	-	-	-	-	1	여
충남	-	-	13	2	1	지자체 귀속	3	노인(2) 장애인(1)	-	-
전북	1	원아감소	5	1	-	-	1	노인(1)	-	-
전남	-	-	2	1	1	타법인 출연	1	노인(1)	1	여
경북	1	재원아동수감소	2	-	-	-	-	-	-	-
경남	1	경영난 ('25년 재개원 예정)	1	-	-	-	1	노인(1)	-	-
제주	-	-	1	-	-	-	1	장애인(1)	-	-

【참고자료 2】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현황

□ 농어촌 등 취약지역 추가 인건비 지원

•대상지역(인건비 및 차량운영비 지원 근거)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원내용

- 대상지역에 설치된 지원대상 어린이집(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육교사 1명 인건비 추가지원(월 지급액의 100%)

※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 치료사, 대체교사 등에 대해 월 11만원('24년 기준) 인건비 지원

□ 어린이집 기능보강

(1) 증·개축비 지원

•지원대상: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시설 중 증·개축이 필요한 시설

- 농어촌지역, 저소득밀집지역,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공단 인근 지역의 영세한 시설, 석면함유건축물로 판정받은 시설을 우선적으로 선정 지원

•지원내용

- 동일 부지 내에서 보육환경 개선 등 보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설의 증·개축비를 지원(창고 증축 등 제외)
- 지원규모 및 단가: 개소당 132㎡까지 지원, 지원단가: 1,397,000원/㎡

※ 국비최대 지원액: 92,202천원, 설계용역비는 지원 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2) 시설 개·보수비

•지원대상: 국공립·사회복지법인 및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중 개·보수가 필요한 어린이집

- 어린이집의 노후화 및 안전성(내진 보강 필요 등)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농어촌지역, 저소득층밀집지역, 공단인근지역, 인구감소지역의 영세한 어린이집 등을 우선지원

•지원내용

- 지원단가: 30,000천원/개소당(국비, 지방비 포함)
- 지자체는 시설의 규모, 개·보수의 필요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20,000천원~40,000천원까지 차등 지원 가능, 국비 최대 지원액 10,000천원~20,000천원

(3) 장비비

•지원대상: 국공립·사회복지법인 및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중 장비비가 필요한 어린이집

- 장비 노후화 및 보육아동 증가의 경우, 농어촌지역, 저소득층밀집지역, 공단인근지역의 영세한 어린이집 등을 우선 지원

•지원내용

- 내용 연수가 5년 이상이거나 단가 5만원 이상인 물품, 통학차량의 후방카메라, 블랙박스, 어린이집 CCTV설치비 등 가능
- 지원규모 및 단가: 2,000천원/개소당(국비, 지방비 포함), 국비최대지원액 1,000천원

□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지원대상: 농어촌 소재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지원내용

- 냉·난방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공과금, 차량운행비, 교직원 인건비 등의 운영비 일부 지원
- 지원단가: 어린이집 규모(정원) 및 정원충족률(매월 말일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단위: 천원/월)

정원 구분	60인 이하	61~80인 이하	81~100인 이하	101~120인 이하	121인 이상
60%이하	240	250	260	270	280
61~80%	220	230	240	250	260
81~100%	200	210	220	230	240

□ **차량운영비 지원**

•지원 대상: 정부지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원 내용: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고, 실제로 통학차량으로 운영하는 차량당 연 240만원(월 20만원)을 지원

자료: 교육부